

## 「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1월 1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평창군 채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 일환과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더 이상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금으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
- 기금 운영 비효율성 증대에 따라 개별기금 일제 정비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 
기금 운영 비효율성 증대에 따라 개별기금 일제 정비와 재정운용

효율성 제고를 위해 「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.

- 「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」는 노인, 여성,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, 조례 상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까지로 되어있고,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지만,
- 일반회계로 부서의 전입금의존도가 높고, 기금 적립금 발생 수익금이 낮아 효율성 제고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에 따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

**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잔여재산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평창군 사회복지기금과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의 잔여재산은 평창군 일반회계로 귀속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」에 따른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평창군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